

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
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

(김경이 의원 대표발의)

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

(김경이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8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6년 3월 23일

발의자 : 고영옥, 김경이, 김육영, 소형준,
양순임, 이용진, 이인순, 임태근,
임현주

1. 제안이유

생활용품·잡화 등 다양한 상업 분야에서 마약류 용어가 상품명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류에 대한 경계심이 희석되고 특히 아동·청소년의 위험 인식이 약화되고 있음. 이에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·홍보 및 정책 추진의 근거를 규정하여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고 마약류의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- 나. 다른 조례와의 관계 (안 제4조)
- 다. 계획의 수립·시행 (안 제5조)
- 라. 실태조사 및 사업 (안 제6조 및 7조)
- 마.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(안 제8조 및 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사전협의 : 의약과

라. 입법예고 : 2026. 3. 27.~ 2026. 4. 2.

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마약류”란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,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,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의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상품명에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(이하 “개선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2.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
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사업) 구청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

2.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, 캠페인 및 자료의 개발·보급

3.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위탁)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다른 지방자치단체,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